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전부개정 2012. 2. 28. 규정 제31호
일부개정 2012. 9. 7. 규정 제40호
일부개정 2014. 10. 14. 규정 제59호
일부개정 2017. 3. 21. 규정 제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이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및 금품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에 따른다.〈개정 2012. 9. 7〉
2. “일반기부금”이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용도, 지원방법 등의 조건 없이 재단에 증여한 기부금을 말한다.〈개정 2017. 3. 21〉
3. “지정기부금”이란 기부자가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 기부방식 등을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
4. “실명제기부금”이란 기부금의 명칭, 사용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기부자와 협의하여 독립적인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신설 2012. 9. 7〉〈개정 2017. 3. 21〉
5. “지정기부금 수혜자”란 지정 기부에서 정한 기부금이 제공되는 단체와 개인, 혹은 이들의 특정 개별 단위사업 등을 말하며, 재단 단위사업에 대한 지정기부의 경우 지정기부금 수혜자는 재단이 된다.
6. “기부자”란 재단에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3. 21〉

제3조(기부금의 종류) 기금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실명제기부금〈신설 2012. 9. 7〉

제4조(기부신청) 이 규정에 따라 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신청서(별지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1. 기부 금액 또는 기부 재산의 표시
2. 기부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3. 지정기부금일 경우에는 기부 조건 및 기부 잔액 처리방법 등의 기부 조건 명기
4. 공개적인 기부금 모집사업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별도 양식 및 기부신청 절차에 따라 기부신청과 기부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다.
5. 현물기부에 대하여 기부자는 해당 기부 현물의 시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견적서, 장부가액 확인서 및 감정서 등을 제출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제4조 2(기부금심의위원회) ① 재단은 기부금 채납여부와 채납된 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신설 2017. 3. 21〉

② 기부금 심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제5조(기부금 채납 결정 및 통지) ①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기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 채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고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수혜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② 대표이사는 기부금 채납 여부 결정시 지정기부금의 조건이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문화예술사업의 목적에 합당한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한다. 다만, 공모에 의한 기부금사업에 관해서는 이를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관련된 제반사항"이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안점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1) 기부자 및 기부금품의 채납상의 타당성 및 가능성

2) 지정기부금에 의한 지원사업의 타당 여부

3) 실명제기부금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사업 수행가능 여부 〈신설 2012. 9. 7〉

④ 기부자와 지정기부금 수혜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채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부금의 처리) ① 기부금을 채납하였을 때는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개정 2012. 9. 7〉

② 재단에 채납된 기부금은 재단의 일반 재산으로 수입 처리하여 관리 운용한다.〈개정 2012. 9. 7〉〈개정 2017. 3. 21〉

③ 지정기부금 중 제5조에 의한 조정 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사업 지원 종료 후에 발생된 잔액(관리기간 중 발생된 이자 포함)은 기부자와의 약정에 따라 일반기부금으로 채납 처리할 수 있다. 단, 기부자가 기부 약정 시 기부금액 잔액 처리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지정기부금 수혜자는 재단에 지정서식의 기부금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부금품을 수령하고 기부금 사용계획에 따른 결과보고 및 회계 정산 서류를 재단과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지정기부금 수혜자가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성과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성과보고 확정시까지 신규 기부금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⑤ 지정기부금 수혜자가 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서 위법성 또는 교부신청서 내용의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교부된 기부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고, 반납된 기부금과 미지급된 기부금의 처리는 재단에서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⑥ 기부금을 다수 회에 나누어 분납하는 경우에도 단일 기부건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실명제기부금의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9. 7〉

제7조(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정 지원) ① 재단은 지정기부금에 의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부효과를 거두기 위해 그 금액과 지급방법, 또는 사업 내용을 기부 채납 이전 또는 기부금의 지원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 지원은 기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정기부금 수혜자에게 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기부자가 제1항에 의한 금액 또는 사업 내용의 조정에 대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을 채납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④ 지정기부금의 처리는 기부약정 시 기부자가 제시한 기부조건을 우선하여 집행하며, 기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과 기부자가 상호 협의한다.

제8조(보고)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 관리 및 운용 내역은 재단회계 규정에 따라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여 처리한다.

부칙(2012. 2. 28 규정 제 31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14 규정 제 59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1 규정 제 93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전문화재단 기부신청서

1. 기부금액	□ 현금 : 원정 (\ )	
	□ 현물품목 : / 시가 원정 (\ )	
2. 기부종류	□ 일반 기부금	□ 창작활동 □ 예술교육 □ 문화복지 □보존 및 연구
	□ 지정 기부금	ㅡ 수혜 예술단체명 : ㅡ 수혜 대상사업명 : ㅡ 기타사항 :
4. 기부금 입금처	□ 일시납	
	□ 분할납	
	■ 은행정보 하나은행 (예금주: (재)대전문화재단) : 622-910007-61904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탁합니다.

· 기부금 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예술단체의 문화예술사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조정에 관하여 (재)대전문화재단의 처분에 동의하며, 기부금액의 관리기간 및 지원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잔액(이자수익 등)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용)

□ 기부금 반환 □ (재)대전문화재단에 조건 없이 기부

(반환 시 수취인명: / 은행명 : / 계좌번호:)
※ 반환 받을 계좌 **통장사본** 첨부 필수

· 본 기부자와 수혜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인)

■ 개인(실무담당자)		■ 법인	
성명(소속부서)		기관명(상호)	
생년월일	(음,양)	대표자성명	
연락처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및 주소	(-)	우편번호 및 주소	(-)
E-MAIL	@	전화/팩스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표 2]<삭제><개정 2014.10.14.>